`

VISA Cash 표준 가맹점 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VISA Cash 표준 가맹점 약관(구하나은행) 제 1 조(목적) (내용생략) 제2조(정의) 1. (내용생략) 2. “VISA Cash의 발행기관”이란 VISA Cash 회원약관(구 하나은행)에 따라 VISA Cash를 발행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과 VISA Cash를 이용한 거래를 결제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3. “회원”이란 VISA Cash 회원약관(구 하나은행)에 따라 발행기관에 VISA Cash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4. (내용생략) 제 3 조(계좌신고 의무 등) ~ 제 22 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내용생략) 제 23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4 조(관할법원) (내용생략)	VISA Cash 표준 가맹점 약관 제 1 조(목적) (좌 동) 제2조(정의) 1. (좌 동) 2. “VISA Cash의 발행기관”이란 VISA Cash 회원약관에 따라 VISA Cash를 발행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과 VISA Cash를 이용한 거래를 결제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3. “회원”이란 VISA Cash 회원약관에 따라 발행기관에 VISA Cash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4. (내용생략) 제 3 조(계좌신고 의무 등) ~ 제 22 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좌 동) 제 23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4 조(관할법원) (좌 동)	구.행명 삭제 구.행명 삭제 구.행명 삭제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